

의안번호	2203404
의 퇴 인	김영배의원
회 답 일	2024.11.12.
추 계 번호	24C346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실시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557억원~1.5조원, 2029년 140억원~1,331억원 등 5년간 총 2,157억원~2.1조원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현행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장구” 사업의 보청기 단가와 급여율(100%)을 준용한 결과로 향후 보건복지부령 따라 정해지는 보청기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 1 : 유병자의 17.5%가 보청기 신청	1,557	161	144	156	140	2,157	431
시나리오 2 : 유병자의 100%가 보청기 신청	14,850	1,532	1,375	1,484	1,331	20,571	4,114

주: 시나리오 1은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의 보청기 사용률을 17.5%(국민건강통계, 최근 3년 평균)로 가정한 경우이며(청각장애인은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 시나리오 2는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경우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 (장애인, 임산부 및 노인에 대한 특례)	○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수급권자에게는 보청기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제3항 신설) ○ 제3항에 따른 보청기 급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3조 (장애인, 임산부 및 노인에 대한 특례)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유사사례인 의료급여의 “장애인보장구” 제도를 준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65세 이상인 수급권자(이하 “노인”)를 대상으로 보청기를 급여화할 경우 발생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제시
- 참고로, “급여화”는 특정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적은 본인부담금만을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기관부담금 또는 급여비)함
 - 따라서, 보청기 급여화 시 보청기를 구매하는 노인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감소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의료급여는 국가의 지자체경상보조 사업¹⁾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지 않고 개정안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일괄 산출함
 - 현재 의료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장애인보장구”²⁾³⁾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1) 2023년 결산 기준 국고보조율 75.7%이며, 서울은 50%, 그 외 지역은 80%를 지원하고 있음
 2) 의지, 보조기,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85종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3)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

며,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입 시 기준액 131만원의 전체 금액(급여율 100%)을 급여 적용받고 있음

- 본 추계에서는 노인 중증도 난청 유병자 중 보청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권자에게 현행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청각장애인)와 동일하게 100%의 급여율을 적용하므로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급여 대상자의 범위나 급여 범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감소할 수 있음⁴⁾
 - 중증도 난청 유병자 중 보청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의 수를 시나리오로 제시
- 추계 첫해에 개정안에 따른 보청기 급여 대상자 전체가 보청기를 구매하고, 차년도부터는 신규로 노인 연령(65세)에 진입하는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보청기 급여 대상자에 대한 가정은 아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에서 제시
 - 현행 보청기 급여에서 정하고 있는 내구연한은 5년이⁵⁾로 추계기간 중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신규 지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참고로,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유형(1종, 2종)과 입원여부, 의료기관 종별(1차, 2차, 3차, 약국)로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5)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와 운영 방식이 동일함

[표 2] “장애인보장구” 내 보청기 급여 개요

구분	개요
급여 대상	▣ 청각장애인 1.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 양측) 제외 ※ 청력개선수술(골도보청기/인공중이/인공와우 이식) 급여 이력이 있을 경우 보청기 급여 불가(양측 보청기 급여 대상자의 경우 수술 반대측 세부인정기준 충족 시 급여 가능)
	▣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청기 기준액: 131만원(적합관리급여 20만원 포함) - 보청기 고시가격: 51~130만원* * 제조국가 및 모델 등에 따라 상이 - 후기적합관리 급여비는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관리를 받은 경우 지급 가능
보청기 내구연한	▣ 5년
비고	▣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매하여야 급여비 지원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는 보청기 급여화로 인한 노인 난청 환자의 보청기 수요 증가 등의 간접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 기존에 보청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던 난청 환자가 급여화에 따라 보청기를 신규 구매할 유인이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현행 중증도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을 준용한 시나리오(1)와 중증도 난청 환자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2)별 추가재정소요를 각각 제시
 - 현시점에 보청기 급여화에 따른 소득탄력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⁶⁾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중증도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률을 직접적으로 가정하기 보다는 현행 수준(시나리오 1)과 최대 수준(시나리오 2)를 비교·제시하고자 함

6) 참고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19~'22년)에 따르면 청각 보조기기 사용률은 소득 수준에 따른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아 소득효과가 관찰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각기기연구회 정연훈 회장은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보청기에 대한 심미적인 거부감이 큰 것 같다’고 해석함(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 23.04.07.)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보청기 급여 대상자 수를 추계하고 보청기 급여비를 곱하여 추계
- (보청기 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수 전망치에 노인 중증도 난청 유병률과 중증도 난청 노인의 보청기 사용률을 각각 곱한 후 기존 급여 대상자인 65세 이상 청각장애인 수 전망치를 차감하여 추계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라, 양측 순음청력검사 후 순음청력평균치가 중증도(41dB이상)인 사람을 보청기 급여 대상자로 분류
 -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전망치에 최근 3년(2021~2023년) 평균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6.9%)을 곱하여 추계
 - 노인 중증도 난청 유병률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의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인 22.3%를 적용하고, 노인 유병자의 보청기 사용률은 국민건강통계의 최근 3년 평균인 17.5%와 유병자 전체인 100%를 각각 시나리오로 제시함⁷⁾
 - － 각 비율은 추계기간 중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보청기 급여의 기 수급권자인 65세 이상 청각장애인 수(2023년 기준 11,148명)⁸⁾를 차감하여 추계

7) 국민건강통계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수로 표본을 표집하므로 동 통계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다만,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난청 유병률과 보청기 사용률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준용하여 활용함

8) 이는 2023년에 신규로 지원한 보청기 건 수로 실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청각장애인의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3] 65세 이상 보청기 급여 대상자 수 추계: 2025~2029년

(단위: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의료급여 수급자 수 (A)	724,047	766,132	798,640	835,020	862,289
중증도 난청 유병자 수 (B=A×22.3%)	161,221	170,592	177,830	185,931	192,003
청각장애인 수 ¹⁾ (C)	12,571	13,302	13,867	14,498	14,972
보청기 급여 대상자 수 (D=B-C)	148,650	157,290	163,964	171,433	177,031
시나리오 1 (E=(B×17.5%)-C)	15,588	16,495	17,194	17,978	18,565
시나리오 2 (E'=(D×100%))	148,650	157,290	163,964	171,433	177,031

주: 1) 당해연도에 의료급여로 보청기를 신규 수급하는 청각장애인의 수

1. 시나리오 1은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의 보청기 사용률을 17.5%(국민건강통계, 최근 3년 평균)로 가정한 경우이며(청각장애인은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 시나리오 2는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경우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첫해에 보청기 급여 대상자 전수가 급여를 신청하고, 2년차부터는 신규로 65세에 진입하는 급여 대상자가 급여를 신청한다고 가정

- 기존 사업을 준용하여 보청기를 구매하고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고 급여비 청구를 한다고 가정
 - 보청기 구입비용에는 전기 적합급여⁹⁾가 포함됨

[표 4] 보청기 급여 계획 추계: 2025~2029년

(단위: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시나리오 1	신규 보청기 급여	15,588	906	700	783	587
	후기 적합급여	-	15,588	16,495	17,194	17,978
시나리오 2	신규 보청기 급여	148,650	8,640	6,674	7,469	5,598
	후기 적합급여	-	148,650	157,290	163,964	171,433

주: 시나리오 1은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 중 보청기 사용률을 17.5%(국민건강통계, 최근 3년 평균)로 가정한 경우이며(청각장애인은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 시나리오 2는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경우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9) 보청기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조절하는(적합) 작업이 필요하며, 보청기 구매 시점에 시행하는 것을 전기 적합관리, 구매 1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을 후기 적합관리라고 함

□ (급여비) 보청기 지원 단가와 급여율은 기존 사업을 준용하여 의료급여가 지불하는 비용은 전체 보청기 관련 비용의 100%로 가정

- 공단은 보청기 기준액인 131만원의 100%를 지원하며, 이는 첫해의 보청기 및 초기 적합비용 111만원과 이후 4년간 매년 지급하는 후기 적합비용 20만원(연 50,000원)을 포함
 - 보청기 기준액은 보건복지부고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를 통해 정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 단가 유지 중

□ 추계결과, 보청기 급여화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난청 유병자의 보청기 신청 비율(17.5%, 100%)에 따라 2025년 1,557억원~1.5조원, 2029년 140억원~1,331억원 등 5년간 총 2,157억원~2.1조원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현행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구” 제도의 보청기 급여율(100%)을 준용한 결과로 향후 보건복지부령 따라 정해지는 보청기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에 따라 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표 5]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1	구 분 2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 1 : 유병자의 17.5%가 보청기 신청	신규	1,557	91	70	78	59	1,855	371
	후기 적합관리	-	70	74	77	81	303	61
	합계	1,557	161	144	156	140	2,157	431
시나리오 2 : 유병자의 100%가 보청기 신청	신규	14,850	863	667	746	559	17,685	3,537
	후기 적합관리	-	669	708	738	771	2,886	577
	합계	14,850	1,532	1,375	1,484	1,331	20,571	4,114

주: 시나리오 1은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의 보청기 사용률을 17.5%(국민건강통계, 최근 3년 평균)로 가정한 경우이며(청각장애인은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 시나리오 2는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경우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구” 제도의 보청기 지원 유형 및 단가 등을 준용하여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41dB) 유병자의 일부 (17.5%)¹⁰⁾ 또는 전체(100%)에게 보청기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가정한 결과로 향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해질 급여 대상, 범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

10)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른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 중 보청기 사용 비율